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12. 18.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25년 11월 7일
나.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5년 11월 17일
라. 상정일자: 제266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5. 11. 2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유원시설업’ 명칭을 ‘테마파크업’으로 변경하고 법령 체계 및 업종 성격에 부합하도록 수수료 항목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별표]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중 라.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에서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고, 카. 관광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테마파크업’ 관련 수수료 항목을 기재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강용철)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원시설업”에서 “테마파크업”으로 업종 명칭이 변경된 「관광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되었음.

○ 검토 결과

- 종전의 「관광진흥법」에서는 각종 놀이시설·놀이기구를 갖추어 제공하는 놀이공원·테마파크류의 관광사업을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으로 규정하고, 설치되는 시설·기구는 유기시설(遊技施設)과 유기기구(遊技機具)로 표현하고 있었음.

- 그러나 유기시설(遊技施設), 유기기구(遊技機具)는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표현으로서 일제강점기 제정된 「유기장영업취체규칙」에서 유래된 일본식 표현이며, 일본 법령에서는 “유기(遊技)”를 도박 등 사행성과 관련하여 해석하고 있으므로 관광객에게 운동·오락·휴식 등을 제공하는 시설·기구로서의 의미에 부합하는 표현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어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을 “테마파크업”으로 「관광진흥법」을 개정(2025.8.28. 개정시행)한 바 있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의 별표를 수정하려는 내용으로 적법한 입법 조치임.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번 호	제643호
-------------	-------

제출연월일: 2025. 11.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유원시설업’ 명칭을 ‘테마파크업’으로 변경하고 법령 체계 및 업종 성격에 부합하도록 수수료 항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별표]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중 라.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에서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고, 카. 관광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테마파크업’ 관련 수수료 항목을 기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 평가 제외

3) 성별영향평가·인권영향평가: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2025. 10. 2. ~ 2025. 10. 22. / 20일간):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중 라목의 1) ~ 4)를 삭제하고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위 : 원)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카. 관광사업에 관한 사항			
1) 종합테마파크업			
가) 종합테마파크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1건	60,000	
나) 종합테마파크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1건	30,000	
2) 일반테마파크업			
가) 일반테마파크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1건	50,000	
나) 일반테마파크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1건	15,000	
3) 기타테마파크업(종합테마파크업과 일반테마파크업은 제외한다)			
가) 기타테마파크업 신고	1건	30,000	
나) 기타테마파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5,000	
4) 테마파크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1건	10,00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